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107호

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우리구로부터 2006. 6.21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반포동 32-5호 외 2필지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5. 10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-5호 외 2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8,594.4 m²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안기성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9, 6층(반포동, 대영빌딩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: 2018. 5. 4.

6. 사업변경내용 : 지하층 바닥면적 증가(48.72㎡), 방음벽 미설치 등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없음

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가. 대지면적 : 38,583.16 ㎡ 나. 건 폐 율 : 17.00 %

다. 용 적 률 : 284.50% 라. 최고높이 : 104.4m

마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지하2층/지상34층, 아파트 11개동, 829세대

공 급 구 분	주택의 형 태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 ~ 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아파트	829	144	237	275	173
분 양	아파트	713	28	237	275	173
소 형	아파트	116	116	-	-	-

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종류	규모(㎡)	종류	규모(㎡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-	-	도로	11.24	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

11. 의제 처리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

12.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45)에 비치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